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종합감사 -

2021. 6. .

처분요구일람표

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 부적정	(주의)		3
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5
3.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등 부적정	(시정)		8
4.	복리후생(종합건강검진지원) 업무추진 부적정	(주의)		13
5.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부적정	(시정)		15
6.	지연배상금 부과금액 산정 부적정	(시정)		17
7.	물품계약 입찰공고 부적정	(주의)		19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관 계 부 서 ☞☞☞☞팀

내 용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및 「경상북도 체육진흥조례」 제18조에 따라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관서운영 기본경비 등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아래 [표]와 같이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다.

[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편성내역

직(위)책	직급	단가(원)	인원	하부조직	구성인원* (팀장포함)	편성액(원)	비 고
계			3			2,400,000	
☐☐☐☐☐☐☐	○급	100,000	1	없음	3	1,200,000	
☞☞☞☞☞☞☞	○급	50,000	1	없음	5	600,000	
⓪⓪⓪⓪⓪⓪⓪	○급	50,000	1	없음	2	600,000	

* 구성인원의 수는 2021. 4. 13. 기준 재직자 기준임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직제 및 정원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팀장은 사무처장의 지휘를 받아 팀 업무를 총괄하고 사무총장 유고시에는 기획총무팀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사무국 정원은 4급 1명을 포함하여 12명으로 되어 있고,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보수규정」 제2조에 따르면 직원의 보수는 이 규정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직책급업무 수행경비는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 지급하는 경비로써 5급의 경우는 시도과장, 기관장, 보조기관, 6급의 경우는 기관장, 보조기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6급 보조기관은 읍면출장소장, 읍·면농민상담소장, 부읍·면장이라 되어 있다.

또한 경상북도 ○○○○○○의 경우는 원장과 과장(4급)에게, ≡≡≡≡≡의 경우는 원장, 국장, 과장에게, 5급이 기관장인 ◇◇◇◇◇◇◇◇◇◇◇◇의 경우는 소장에게만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급 ㉮㉮과 ○급 ㉮㉮의 경우는 경상북도 관련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위 [표]와 같이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 대상이 아닌 3명의 ㉮㉮에게 직책급업무추진비를 보조금 예산에 반영하여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관 계 부 서 〰〰〰〰팀
내 용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회계규정」 제2조에 따르면 본회의 예산, 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63조에 따르면 이 규정 및 규약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의 관련법령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1. 1인당 10만원 초과 축·부의금 등 집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¹⁾」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 집행기준에 따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의 축·부의금 집행 한도액은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축·부의금을 대신하여 화분 또는 화환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10만 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는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축·부의금을 지급하면서 화환·화분도 중복 지급한 사실이 있다.

1) 2018. 3. 30. 시행, 2019. 4. 18. 시행, 2019. 5. 28. 시행, 2020. 1. 1. 시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2021. 1. 1. 시행)

[표 1] 축·부의금 및 화환 중복 집행현황

(단위 : 천 원)

대상자	집행일	건 명	금 액	비고
계		8건	1,120	
AAA	2021.2.18.	부친상 부의금 전달	50	
	2021.2.19.	조화 구입 전달	80	
BBB	2020.9.15.	조부상 부의금 전달	50	
	2020.9.17.	조화 구입 전달	80	
CCC	2020.7.30.	조모상 부의금 전달	50	
	2020.7.30.	조화 구입 전달	80	
DDD	2020.6.10.	△△처 직원 결혼 축의금 전달	50	
	2020.6.12.	본회 직원 결혼 축하 화환 구입 전달(DDD)	80	
EEE	2019.9.25.	본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결혼 축의금 전달(EEE)	50	
	2019.9.30.	본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결혼축하 화환 구입 전달	100	
GGG	2019.2.22.	본회 직원 결혼 축의금 전달(GGG)	50	
	2019.2.28.	본회 직원 결혼 축하 화환 구입 전달(GGG)	100	
HHH	2018.5.3.	본회 ㉸㉸㉸㉸팀장 병모상 부의금 전달	50	
	2018.5.4.	본회 ㉸㉸㉸㉸팀장 병모상 조화 구입 및 전달	100	
KKK	2018.4.12.	본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결혼 축의금 전달	50	
	2018.4.18.	본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결혼축하 화환 구입	100	

2. 관할구역이 아닌 유관기관 임직원에게 축·부의금 지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²⁾」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 집행기준에 따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의 축·부의금품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에게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관할구역 외의 유관 기관 임직원에게 축·부의금 총 10건, 500천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2) 2018. 3. 30. 시행, 2019. 4. 18. 시행, 2019. 5. 28. 시행, 2020. 1. 1. 시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2021. 1. 1. 시행)

[표 2] 관할구역이 아닌 유관기관 임직원에 축·부의금 지급내역

(단위 : 천 원)

집행일	집행 내용	금 액	지급처	비고
계	10건	500		
2020.01.20.	□□□□장애인체육회 ♣♣♣장 모친상 부의금 전달	50	□□□□장애인체육회 LLL ♣♣♣장	
2020.07.20.	○○○○장애인체육회 ♣♣♣장 자녀 결혼 축의금 전달	50	○○○○장애인체육회 ♣♣♣장 MMM	
2019.04.08.	○○○○장애인체육회 ♣♣♣장 자녀 결혼 축의금 전달	50	○○○○장애인체육회 ♣♣♣장 NNN	
2019.07.19.	◇◇◇장애인체육회 ♣♣♣장 부친상 부의금 전달	50	◇◇◇장애인체육회 PPP ♣♣♣장	
2018.08.10.	□□□□장애인체육회 ♣♣♣장 부친상 부의금 전달	50	□□□□장애인체육회 RRR ♣♣♣장	
2018.08.24.	◆◆◆◆◆장애인체육회 ♣♣♣장 자녀 결혼 축의금 전달	50	◆◆◆◆◆장애인체육회 QQQ ♣♣♣장	
2018.09.28.	◆◆◆◆◆장애인체육회 ♣♣♣장 모친상 부의금 전달	50	◆◆◆◆◆장애인체육회 QQQ ♣♣♣장	
2018.10.12.	○○○○장애인체육회 ♣♣♣장 자녀 결혼 축의금 전달	50	○○○○장애인체육회 NNN ♣♣♣장	
2018.12.20.	○○○○장애인체육회 ♣♣♣장 빙부상 부의금 전달	50	○○○○장애인체육회 MMM ♣♣♣장	
2018.12.24.	◇◇◇장애인체육회 ♣♣♣장 모친상 부의금	50	◇◇◇장애인체육회 PPP ♣♣♣장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련자 ♣♣♣는 「직원 훈계 등 처분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주의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등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관 계 부 서 ☎☎☎☎팀
내 용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 및 「경상북도 체육진흥조례」 18에 의거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관서운영 기본경비 등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다.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보수규정」 제20조에 따르면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등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 제60조에서 정하는 조항을 준용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취업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³⁾

1.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부적정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개정 2016.12.27>

따라서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거나, 수당지급 대신 휴가를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단가를 적용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도, 별도로 아래 [표 1]과 같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을 적용하여 매월 정액으로 1인당 10시간씩 총 31,706천 원의 초과근무수당 정액분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표 1]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지급현황

(단위 : 원)

대상자		연도	월평균 지급액	지급개월	금 액	비고
(현)직급	성 명					
계	10명				31,706,950	
○급	AAA	2020년	396,020	12개월	4,752,300	
		2021년	403,380	2개월	806,760	
○급	BBB	2020년	297,460	12개월	3,569,580	
		2021년	305,480	2개월	610,960	
○급	CCC	2020년	312,400	12개월	3,748,860	
		2021년	317,270	2개월	634,540	
○급	DDD	2020년	261,850	12개월	3,142,260	
		2021년	267,440	2개월	534,880	
○급	EEE	2020년	206,130	12개월	2,473,560	
		2021년	199,000	2개월	398,000	
○급	GGG	2020년	218,130	12개월	2,617,560	
		2021년	224,600	2개월	449,200	
○급	HHH	2020년	194,770	12개월	2,337,340	
		2021년	200,630	2개월	401,260	
○급	JJJ	2020년	148,180	12개월	1,778,230	
		2021년	154,860	2개월	309,720	

대상자		연도	월평균 지급액	지급개월	금 액	비고
(현)직급	성 명					
○급	KKK	2020년	140,830	12개월	1,690,030	
		2021년	144,950	2개월	289,900	
○급	MMM	2020년	139,950	6개월	839,730	
		2021년	161,140	2개월	322,280	

2. 연차유급휴가 수당 미지급 부적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되어 있고,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61조, 제6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시기를 정하여 사용토록 서면으로 촉구하였거나,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소멸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되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법률에 의거 발생한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일에 대하여는 휴가사용을 촉진토록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서면으로 통보 하지 아니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사용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연차유급휴가수당 8,428천 원을 미지급 하였다.

[표 2]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내역

(단위 : 원)

대상자		연도	연차 일수	사용일수	미지급된 연차유급 휴가일수	통상임금 시 급	미지급된 연차유급 휴가수당	비고
직급	성 명							
계	8명						8,428,144	
○급	AAA	2018	20일	16일 4시간	3일 4시간	21,341	512,184	
○급		2019	21일	18일 7시간	2일 1시간	25,067	401,072	
○급	BBB	2018	20일	12일 5시간	7일 3시간	17,727	992,712	
		2019	21일	14일 6시간 10분	6일 1시간 50분	18,990	911,520	
		2020	21일	18일	3일	19,757	474,168	
○급	CCC	2018	20일	9일 1시간	10일 7시간	18,344	1,467,520	
		2019	21일	17일 1시간	3일 7시간	19,791	474,984	
○급	DDD	2019	20일	10일 3시간	9일 5시간	15,504	1,116,288	
		2020	21일	17일 1시간	3일 7시간	17,652	423,648	
○급	EEE	2018	18일	11일 7시간 30분	6일 30분	13,205	633,840	
		2019	18일	16일 3시간 30분	1일 4시간 30분	14,528	116,224	
		2020	19일	15일 6시간 30분	3일 1시간 30분	15,638	375,312	
○급	GGG	2019	18일	16일 2시간 30분	1일 5시간 30분	13,692	109,536	
○급	HHH	2018	8일	4일 3시간	3일 5시간	11,350	272,400	'18.4.17. 입사
○급	KKK	2019	6일	5일	1일	8,944	71,552	'19.7.1. 입사
		2020	14일	12일 7시간 30분	1일 30분	9,398	75,184	

※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 직급, 통상임금 시급은 연도말 기준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x 통상임금 (통상임금 시급 x 8시간)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과다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31,706,950원은 환수하고, 미지급된 연차유급 휴가수당 8,428,144원은 지급하시기 바라며,(시정)
- ③ 관련자 ◇◇◇는 「직원 훈계 등 처분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라며, ■■■은 **주의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복리후생(종합건강검진지원) 업무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관 계 부 서 ☎☎☎☎팀
내 용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보수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시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4)에 따르면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개인별로 맞춤형 복지포인트(기본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 건강검진지원점수)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조에 의하면 영 제25조 제1항의 “사무직”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

4)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맞춤형 복지제도 지급기준 : 기본점수(900점 일률), 근속점수(최고 300점), 가족점수(최고 300점), 건강검진(최고 300점) / 포인트 1점당 1천원 지원

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무직으로 분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이를 변경하도록 했어야 했다.

그런데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AAA 등 4명은 2년에 1회 복지포인트(건강검진비) 300,000원을 지원하여야 함에도 사무직으로 분류하지 않아 아래 [표]와 같이 1년에 1회 복지포인트를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표] 1년마다 지원된 종합건강검진 지원내역

(단위 : 원)

연번	대 상 자		연 도	종합건강 검진지원	과다지급	비고
	직 위	성 명				
계		4명			1,200,000	
1	◎ ◎	AAA	2018	300,000	300,000	
			2019	300,000		
2	◎ ◎	JJJ	2019	300,000	300,000	
			2020	300,000		
3	◎ ◎	KKK	2020	300,000	300,000	
			2021	300,000		
4	◎ ◎	HHH	2019	300,000	300,000	
			2020	300,000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관 계 부 서 ㄹㄹㄹㄹ팀

내 용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회계규정」 제2조에 따르면 본회의 예산, 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63조에 따르면 이 규정 및 규약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의 관련법령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경상북도재무회계규칙」 제71조 및 제141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 현금을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구분하여 정리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세입세출외 현금 장부를 관리하고 있지 않았고, 아래 [표]와 같이 22,141,005원에 대한 발생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어 반환이나 수입조치를 하지 못하고 장기간 보관하고 있다.

[표]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현황(2017. 1. 1. ~ 2021. 4. 2.)

회계연도	수입액	지출액	잔 액
계	462,346,215	440,205,210	22,141,005
2017년(2016년 이월액)	18,202,082	-	18,202,082
2017년	95,778,100	95,168,860	609,240
2018년	107,524,400	104,941,460	2,582,940
2019년	108,810,260	104,814,460	3,995,800
2020년	113,176,640	107,388,760	5,787,880
2021년	18,828,180	27,891,670	-9,063,490
2017년~2020년 예금이자	26,553	-	26,553

또한 감사기간 중 확인된 사항으로 2020. 7. 10. 상반기 갑근세 6,579,630원이 과소 신고되어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보관 중에 있는 등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업무추진에 부적정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장기간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대하여는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장부를 비치·작성하시기 바라며, 과소 신고하여 보관 중인 2020년 갑근세 6,579,630원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는 「직원 훈계 등 처분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지연배상금 부과금액 산정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관 계 부 서 ♣♣♣♣팀
내 용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회계규정」 제2조에 따르면 본회의 예산, 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63조에 따르면 이 규정 및 규약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의 관련법령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2항에 따르면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 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2020. 10. 15. △△△△과 280,435,500원의 물품 구매를 납품예정일을 2020. 12. 18. 로 계약 체결하였고,

[표 1] 장애인 전문체육 용품 구입 계약내역

계약일	사 업 명	계약금액(원)	업체명	납품예정일
2020. 10. 15.	장애인 전문체육 용품 구입	280,435,500	△△△△	2020. 12. 18.

△△△△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2020. 12. 18. 내에 268,310,320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품하고, 납품기일을 6일 초과한 2020. 12. 24. 12,125,180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품하였다.

[표 2] 납품 내역

납품일	납품내역	납품금액(원)	실제 부과 지연배상금	정 상 지연배상금
		280,435,500	1,346,100	58,200
2020. 12. 17. ~ 12. 18.	○○○(장애인용) 등 71개 품목	268,310,320	1,346,100 ⁵⁾	0
2020. 12. 24	□□□□ 등 7개 품목	12,125,180		58,200 ⁶⁾

따라서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기납부분 268,310,320원을 제외한 12,125,180원에 대해서만 58,200원의 지연배상금을 부과했어야 했다.

그런데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1,346,100원의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 정상 부과액에 비해 1,287,900원을 과다 부과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과다 부과한 지연배상금 1,287,900원을 환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는 「직원 훈계 등 처분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주의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5) (280,435,500원*0.8/1,000)*6일=1,346,100원

6) (12,125,180원*0.8/1,000)*6일=58,200원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물품계약 입찰공고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관 계 부 서 〰〰〰〰팀
내 용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회계규정」 제2조에 따르면 본회의 예산, 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63조에 따르면 이 규정 및 규약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의 관련법령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1억 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에 따르면 입찰 참가자가 중소기업자일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1억 원 미만인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을 해야 하고, 소상공인 여부는 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 하되,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했어야 했다.

그런데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2018. 9. 6. 제○○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임원 및 선수단 □□구매(추정가격 57백만원) 건을 입찰공고하면서, 입찰참가자
격부분에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잘못 기재하여 공고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